

교내근로장학생 서약서

본인은 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,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,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,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·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,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.

1. [신청] 본인은 근로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소속대학의 자격사항(학적, 성적)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하였음에 동의합니다.
2. [선발] 본인은 근로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소속대학, 근로기관에 허위사실 기록,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,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.
3. [근로업무] 본인은 근로장학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, 근로 불성실, 직무상의 업무 불이행, 책임감 부족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만약 근로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 진행 불가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즉시 근로 종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4. [준수의무] 본인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.
 - 가. 사전교육이수 : 서약서, 오리엔테이션 자료 확인 등 근로활동 시작 전 사전준비사항
 - 나. 출근부 입력 의무 : 근로 후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, 늦어도 반드시 근로일 포함 5일 이내에 근로한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, 내용이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확인할 것
 - 다. 학적변동 신고 및 근로중단 의무 : 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 가능함을 숙지하고,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
5. [근로장소] 본인은 반드시 대학에서 배정한 근로기관(근로지)에서 근로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, 기관에 제공한 활동장소에서 근로함을 확인합니다. 만약 이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 또는 재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.
6. [제재] 본인은 부정근로 등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유에 따른 제재 및 근로장학금에 참여 제한됨에 동의합니다.
 - 가. 부정근로
 - 허위근로, 대리근로, 대체근로 :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,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
 - 나. 부적격자
 - 근로지 무단 이탈, 근태 불량, 업무 불이행, 관련 서류 미제출 :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

2020년 월 일

학과 :

서약자 :

(서명)